

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[원주영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34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16.

발의자 : 원주영, 김지훈(국), 이경숙,
박윤옥, 김영실, 이수련,
정현미, 박경원, 전해연,
김지훈(민), 이진환, 김동훈,
한근수, 박은경

1. 제안이유

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시키고, 재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의회동의 및 보고 일부규정 명확화(안 제6조제2항)

나.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신설(안 제10조제1항제1호~제3호)

다. 재계약 조문명 개정 및 재위탁 의회동의 신설(안 제19조제1항~제5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예산수반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)

6. 관련법령 :

가. 「지방자치법」

나.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

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위탁기간 중에 다음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능력 평가 등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
2. 수탁기관의 위탁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9조의 제목 “(재계약)”을 “(재위탁 · 재계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재계약”을 “재위탁 · 재계약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재계약”을 “재계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전단 중 “재계약”을 “재위탁 · 재계약”으로 한다.

- ② 시장은 재위탁 · 재계약 시 의회동의 이전에 제5조에 따른 위탁사

업의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수탁기관을 연속하여 선정하고자 할 경우, 제4항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이거나, 제8조제1항 과정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 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<u>다음</u>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10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 ① 시장은 <u>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능력 평가</u>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, 해당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6조 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 <u>위탁기간 중에 다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민간위탁심의위원회) ① ----- ---- <u>다음 각 호의 사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</u></p> <p>2. <u>수탁기관의 위탁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<u>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제19조 (재계약) ① 시장은 수탁
사무에 대하여 재계약하고자 하
는 때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
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
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
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
와 제17조의 지도·감독 결과를
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재계약 내용 등을 공
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8조
제3항을 준용한다.

제19조 (재위탁 · 재계약) ① ---
----- 재위탁 · 재계약 -

-----.

② 시장은 재위탁 · 재계약 시
의회동의 이전에 제5조에 따른
위탁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하여
야 한다.

③ 시장은 재위탁하고자 하는
사무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
수탁기관을 연속하여 선정하고
자 할 경우, 제4항을 준용한다.

④ ----- 재계약 -----

⑤ ----- 재위탁 · 재계약 -----
-----.
-----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개정 후에도 비용 발생 및 증가 대상이 아님

연번	개정내용
1	(안 제6조제2항) 일부규정 명확화 - “다음” → “위탁기간중에 다음”으로 수정
2	(안 제10조제1항) 중 “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능력 평가 등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”으로 하고,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심의 사항 구체화 1.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2. 수탁기관의 위탁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3	(안 제19조제1항~제5항) 재계약 조문명 개정 및 재위탁 의회동의 신설 - “제19조(재계약)” → “제19조(재위탁·재계약)”으로 조문명 개정 및 -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·재계약 의회 동의 명확화로 동의누락 사례 방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문길모

☑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☑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,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, 「정부조직법」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(干與)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위임”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위탁”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민간위탁”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

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4. “위임기관”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, “수임기관”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.

5. “위탁기관”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, “수탁기관”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,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(이하 “행정권한”이라 한다)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, 다른 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,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,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위탁기관(이하 “민간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계약의 체결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,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, 위탁기간, 민간수탁기관의 의무,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휘·감독)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5조(사무편람)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, 처리기간, 처리절차, 처리기준, 구비서류,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
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6조(처리 상황의 감사)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

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,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.